

○ 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치료보호"라고 규정하면서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용어 중복 사용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혼동이 우려됨
-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 용어를 변경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굳이 변경한다면 "치료보호"가 아닌 다른 용어를 선택함이 상당함

2. 치료보호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제2호)

가. 약물중독 사범의 제외

○ 법률안

제1조(목적)와 제2조 제2호(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만을 치료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현행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인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사범은 대상에서 제외

○ 의견

약물중독 사범을 대상으로 규정함이 상당

○ 이유

- 약물에 대한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매우 높으며,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된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은 형사처벌 보다는 치료적 처우가 필요하므로 약물중독범죄자도 보안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여야 함

※ 약물중독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적 처우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독일을 비롯하여 보안처분 제도를 채택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도 약물중독범을 보안처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약물중독범을 제외한 이유가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보호로 규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되는 마약사범은 초범 또는 극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이고, 그나마 동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약물사범 중 약물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안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함

나.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제한

○ 법률안

제2조 제2호(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의)에서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로 대상을 제한

○ 의견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재검토 필요

○ 이유

- 보안처분 대상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남용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은 일응 수긍하나,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제한할 경우 위험성이 큰 상당수 범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 절도, 강요, 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지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징역 5년 이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존속 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징역 5년 이하) 등도 대상이 되지 못함

-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모두 치료감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 사회보호법 체제하에서도 실제 치료감호대상이 된 범죄는 살인, 폭력, 강도, 강간, 절도 등이 대부분으로 남용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도 없으므로 법률안과 같이 대상 범죄를 극도로 축소할 필요는 없음

※ 법안대로 할 경우, 심신상실자가 치료보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 형사처벌도 치료보호도 불가능하여 그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또 다른 위험한 범행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 사법의 시각지대가 발생함

### 3. 치료보호의 요건(안 제8조 제3항)

#### ○ 법률안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그 사건을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의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삭제함이 상당

#### ○ 이유

- 현행 사회보호법은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중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제14조 제5항)에 치료감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안처럼 검사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변경하여 심리하고 치료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 형사법 체제와 전혀 맞지 않음

### 4. 치료보호의 기간 및 형벌과의 관계(안 제23조 제2항)

#### ○ 법률안

법률안 제 23조 제2항은 치료보호시설에의 최대 수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

#### ○ 의견

현행 치료감호와 같이 부정기로 규정하거나, 최대 수용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

#### ○ 이유

- 정신분열, 조울증, 망상장애 등 고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른 대상자들을 일률적으로 3년 내에 재범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임
- 정신질환은 발달된 현대 의학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가장 많아 그 치료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이태리 등 보안 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입법례에서도 치료처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사회보호법처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굳이 기간을 제한한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장기로 규정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이 상당함
- 다만, 약물중독사범의 경우는 정신장애의 경우와 달리 치료기간이 단기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가능 (법률안은 약물중독사범을 치료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상으로 포함함이 상당)

### 5. 치료보호처분과 형벌과의 관계(안 제28조)

#### ○ 법률안

법률안 제28조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의견

잔형기는 집행하는 것이 책임원칙 및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

#### ○ 이유

- 법원이 판결 선고시 병과형 부과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결과,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도 형을 복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병과형을 선고한 이상 잔형기는 집행하는 것이 책임원칙 및 법감정에도 부합
- 확정된 판결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남

- 한편, 법안에서는 "잔여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그 결정주체나 형식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도 문제점 있음

### 6. 지정치료보호시설(안 제2조제4호,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장)

#### ○ 법률안

- 법률안 제2조제4호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공립의료시설 및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수용, 치료·관리하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규정
- 법률안 제6장(제37조 내지 43조)은 각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3인, 정신과 전문의 자격자 3인, 사회복지사 자격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 의견

- 별도의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운영할 필요 없이, 현행 공주치료감호소를 치료보호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함
- ※ 굳이 지역별로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운영한다면, 보건복지부 및 국공립 의료시설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설과 인력을 정비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역별 치료보호심의위원회 대신, 현행처럼 법무부 산하에 단일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및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요양시설은 범죄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를 치료, 요양시키는 시설인 반면 피치료보호자들은 살인, 강간, 폭력, 방화 등 중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자들로서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제호를 함께 해야 할 대상임
-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정신병원과 수용시설의 기능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의료진과 수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여야 함
- 일반 병원에 위험한 정신질환 중범죄자들을 일반 환자와 함께 수용할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물론 의료진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결국 피치료보호자들을 국공립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병동을 설치하거나 치료 및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과 요양시설 및 이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시설과 인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절차가 필요함
- 반면, 공주치료감호소는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시설과 전문 의료진 및 감호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고, 2004. 9. 현재 700명 내외의 피치료감호자들을 수용, 치료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구비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치료보호대상자들은 모두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치료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시설을 공주치료감호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 기구도 법무부에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심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소요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7. 가중료 등의 심사·결정(안 제31조)

○ 법률안

법률안 제31조에서 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종료 여부만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

○ 의견

종료·가중료 등 치료보호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심사·결정은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 이유

- 형과 보안처분의 집행 분야는 법무·검찰행정의 영역으로 다루어 온 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이고, 그 일환으로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 사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 집행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왔음
-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형의 선고를 담당하고, 형의 집행은 별도의 집행기관이 맡아하는 것이 당연함
- \* 독일의 경우 법원에서 보안처분 집행관련 업무를 심사하나 독일은 사실심 법원 외에 가석방 등 형집행 관련 업무를 비롯한 사법행정 영역을 전담하는 형집행법원(형집행부 : Strafvollstreckungskammer)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동 법원에서

보안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도 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관련 형사법 체계가 전혀 다른 독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음

8. 고소취소된 친고죄,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독립감호 청구규정 등(사회보호법 제15조 제2,3호) 삭제

○ 법률안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는 고소취소된 친고죄,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동조 제2호)와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받은 경우(동조 제3호)에도 공소제기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제12조는 위 두 경우를 독립감호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의견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3호 경우도 독립하여 감호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유

- 고소취소된 친고죄와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독립감호 청구를 인정하면 책임무능력자가 한정책임능력자나 책임능력자보다 불리하게 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나, 보안처분의 본질이 범죄자의 장래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추조건을 결하였다고 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책임조건을 결한 경우에도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음)
- 피의자의 정신상태 등을 감안하여 본안은 기소유예처분하면서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기소유예처분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감호청구만을 하여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 제3호를 삭제한 것은 부당함

9. 기타사항

- 법률안 제17조 제3항의 "청구기각의 결정"은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수정함이 상당
- 법률안 제19조 제1항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현행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처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상당
-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하고(안 제37조 제2항), 해촉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안 제39조 제1항) 한 것은 모순
- 이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자구와 표현을 다듬는 등의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함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법령**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2005. 9.

법무부

## 1. 의결주문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 이유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근거규정인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제도만을 규율하는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 내용

- 가. 사회보호법시행규칙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보호감호제도를 근거로 규정된 부분은 모두 삭제
- 나.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 청원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안 제14조)
-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종전 사회보호위원회 관련 규정 용어 정비(안 제27조 내지 제34조)
- 라. 기타 제정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시행령에 따라 용어 및 법령 체계를 정비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함은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치료감호사안"이라 함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치료감호라고 주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지문조회)통보서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의 송치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영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의 식음등의 습벽 또는 중독의 정도
4. 기타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형명, 형기 및 치료감호기간·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인명·죄명등을 명시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④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서 또는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구속(치료감호)영장(등본)·변호인선임계·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및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판결과와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판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기재하여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집행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치료감호집행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등)**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형이 병과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 결정되었으나 잔형기가 있는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잔형기등 형의 집행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서약서)** ①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 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청원관리)** ①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30조, 영 제8조에서 규정한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비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진술서)** ①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기타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서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호관찰자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의 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신고)** ①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부를 비치하여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 제2항, 영 제1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퇴거신고 접수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호관찰부) ①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이 영 제11조제3항·제4항·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중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1조 (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이나 여행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내에 체재하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월마다 정기적으로,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등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신주거지 관할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소신고서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4조 (가중료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중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잔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중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5조 (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제26조 (보호관찰관등의 주의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기타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 기타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중료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학력 및 경력·가족관계 및 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의 양부·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에 따라 조사의 직무를 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9조 (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조 (심사신청서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⑤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33조 (송달등의 방법)** ①위원회가 동일인에게 2건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에 의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위원회가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소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직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으며, 공무원인 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장부와 비치서류등)**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사

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비치하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원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침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제37조 (치료감호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 (치료감호 사안조사기록의 보존기관등)** ①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에 보존중인 치료감호 사안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검찰사건사무규칙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검찰집행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보고사무규칙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 상	금 액
출석수당(1회)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70,000원
	간 사	20,000원
	서 기	10,000원
여 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문위원	차관인 국가공무원의 여비상당액

[별지 제1호서식]

20 보구 제 호		검찰청		년 월 일	
20	형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제 목	치료감호영장청구	검사	①		
성 명	( ) 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보구 제 호		경찰서		년 월 일	
수신	검찰청	발신	경찰서		
제 목	치료감호영장신청	사범경찰관	①		
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경찰서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신청원인사실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보구 제 호		검찰청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 목	치료감호영장청구	위와 같은 치료감호영장신청이 있는바 보호구속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검찰청	①		
		검사			
기각의 취지 및 이유					
(치료감호영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갑)]

20 형 제 호		○○검찰청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①		
제 목 치료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치료감호청구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직 업				
	주 거				
	본 적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죄명	( )
신병	20 . . . (보호)구속	불구속			
변호인					
붙임 : 1. ○○영장(등본) 1통 2. 변호인선임계 1통 3. 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을)]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갑)]

20 형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검 찰 청 년 월 일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제 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 호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본 거 적	( ) ( ) 세)	
죄 명	별지와 같음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 구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 법 조	불구속		
신 병	20 . . . (보호)구속	불구속	
변 호 인	불임 : 1. ○○영장(등본) 1통 2. 변호인선임계 1통 3. 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1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을)]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	--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차 장 검 사	○○지방검찰청	보 존 치료감호 청구서 재 기	년 월 일 년 월 일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20 년 형 제 호		주임검사	
치료감호대상자		죄 명	
결 정 명 령		년 월 일	
집 행 월 일	석방지휘	인 20 . . .	집 행 인 20 . . .
사 건 월 일	불사 청구 구유	비 고	
압 수 물 건 처 분		비 고	
압 수 월 일	명 령 가환부대로 본 환 부	인 집 행 인	비 고
결과통지 월 일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비 고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20 감집 제 호 수 신 : ○○소장		○ ○ 검 찰 청 년 월 일 발신 : ○○검찰청 검사	
제 목 : 치료감호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치 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함			
피 치 료 감 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본 거 적	( ) ( ) 세)	
판 결	법 선 원 고 확 정	○ ○ 법원 20 . . . 20 . . .	
치료감호집행개시일		20 . . .	
통 산	판 결 정	일 일	
비 고	상소권포기, 재판확정		

(치료감호집행지휘서)

[별지 제7호서식(갑)]

검찰청

치료감호집행장번호	치료감호집행장	20 감집 제 호	20 형 제 호
성명	( )	(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지	( )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20 . . . .		
확정연월일	20 . . . .		
피치료감호자배회처 기타참고사항	위 사람에게 대한 치료감호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에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20 . . . . 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	① (치료감호집행장)	

[별지 제7호서식(을)]

20 감집 호	○○경찰서	년 월 일
수신 ○○검찰청	검사	발신 ○○경찰서
제목 치료감호집행장 집행보고	사법경찰관	①
다음과 같이 집행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집행일시	19 . . . .	
집행장소		
인치일시	19 . . . .	
집행불능사유		
집행한자의 관직		
성명		
날인		
비고		
		① (치료감호집행장)

[별지 제8호서식]

○○감호소			
20 제 호	조사번호:	년 월 일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신 ○○감호소장	
참조			
제목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피감호자 인적사항	성명		수용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거지		
치료감호 집행사항	죄명		병명
	확정일자		선고법원
	치료감호 개시일		20 . . . .
보고대상기간	20 . . . . ~ 20 . . . .	입소일자	
보고내용			
참고사항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피치료감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직업	
	주거지	
	본거지	

본인은 위 피치료감호자의 (관계)인 바, 동인에 대한 치료를 위탁하여 주시면 철저히 치료, 완치시키도록 하겠으며, 동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과 보호관찰담당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 ①

- 첨부 : 1. 입원보증서(치료받을 병원장의 확인요)  
2. 법정대리인등관계 소명자료  
3. 입원·치료능력 소명자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귀중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청원관리부

청원 접수			결	주 무	사무관	과 장	소 장
			재				
접수일시	병 동	청원자	청원 내용				소 관

청원 처리			결	주 무	사무관	과 장	소 장
			재				
처리일시	병 동	청원자	처리 내용				소 관

(청원관리부)

[별지 제11호서식]

지 시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치료감호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 지 시 사 항 -

- 1.
- 2.
- 3.
- 4.
- 5.

년 월 일

보호관찰관 ○ ○ ○ 인

(지시서)

[별지 제12호서식(갑)]

진 술 서	
본 주 주민등록번호: 직	작: ( 통 반 ) 거: ( ) 성 명: ( ) 전화번호:
위의 사람은            에 대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진술서)

[별지 제12호서식(을)]

진 술 서(제 회)	
주 성	거: ( 통 반 ) 명:
위의 사람은            에 대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전화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진술서)

[별지 제12호서식(병)]

위의 진술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내용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준 바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20 . . . .

진 술 자                                    ①

보호관찰관                                ①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신고인	본적	( 통 반 )		
	주거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보호관찰개시일자	20 . . .	신고대상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신고사항	주요활동사항			
	약복용실태 치료현황등			
	교제, 회합한 우범자			
	여행사항			
	선행사항			
	기타(신상 변동사항 등)			
본인은 치료감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보호관찰관 귀하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접수부

순번	접수일자	신고내용	신고인	신고필증 교부란	보호관찰 관 확인	비고
1						
2						
3						
4						
5	~~~~~	~~~~~	~~~~~	~~~~~	~~~~~	~~~~~
12						
13						

(신고접수부)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필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신고내용	
접수일시	20 . . .
기타	
위 사람은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이 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보호관찰관 〇〇〇 ㉠	

주의 : 이 필증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 신고서

현주거지	
주거이전사유 (여행사유)	
신주거지 (행선지)	
경유예정지	
출발예정일시	
도착예정일시	
동반가족 (동행예정자)	
교통편	
비고	

첨부 : 퇴거신고접수증 사본

본인은 치료감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보호관찰관 귀하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갑)]

보호관찰부

번호	작성일자		피보호관찰자		
인적사항	성명	( )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 세 )			
	주거본적	~			
	전화번호	집	휴대폰	직장	
직업	직장소재지			전화	
	직위 및 직책				
재산관계	월수입	동산	부동산	주택여부	가족의 재산상황
				자가·셋집 하숙 기타	
보호관찰개시사유			판결법원		
보호관찰개시일자			판결년월일		
판결요지	징역·금고 년 월 치료감호				
잔여치료감호기간			집교도소		
비고					

(보호관찰부)

[별지 제17호서식(을)]

신고사항		보호관찰사항		
신고일시	신고내용	관찰일시	관찰내용	관찰자성명

(보호관찰부)

[별지 제18호서식]

○○보호관찰소				
20 년 관찰제 호			년 월 일	
수신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신 : 보호관찰관	
참조 :			○○○㉠	
제 목 : 보호관찰( 정기 )보고서 수시 )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본적			
보호관찰	개시사유			
보고내용	개시일자			
참고사항				

(보호관찰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통보서  
여행

아래 사람의 주거이전·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피보호관찰자	성명	( )	직업	성별	남·여
	생년월일	20 . . .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행선지)					
관찰내용·도착및출발일시					

- 첨부 : 1.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신고서 사본 1통  
2. 보호관찰부(주거이전의 경우에 한함)  
3. 참고서류

년 월 일  
보호관찰담당자

㉠

보호관찰관 귀하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성명	( )	성별	남·여
생년월일	20 . . .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입소전주소			
출소후의거주예정지			
거주예정지도착예정일시			
출소후의생활계획기타			
치료감호소장의요구사항			

본인은 치료감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치료감호소장 귀하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치료감호소

년 월 일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  
보호관찰관

발신 : 치료감호소장 ㉠

참조 제목 피치료감호자출소통보  
당소에서 출소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합니다.

(사진)	성명	( )	성별	남·여
	본적		생년월일	
	입소전주소		주민등록번호	
	종교	가입단체	병역관계	
	학력	경력	해외여행관계	
출소후의거주예정지				
거주예정지도착예정일시				
출소후의생활계획				
출소후의동거가족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재산상태
치료감호판결내용	교우관계			
	판결법원	판결연월일	감호내용	죄명
	전과및감호경력			형명,형기
범죄사실요지				
치료받을병원및소재지				
출소사유	가중료 치료위탁 기타( )			
비고				

(피치료감호자출소통보)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

성명	( )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거	
직업			
전화번호	집	휴대폰	직장
주거지도착일시	년	월	일
생활계획			
기타			

치료감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보호관찰관 귀하

( )

[별지 제23호서식(감)]

○○ 지방검찰청		검사장
20 치신제 호	년 월 일	
수신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신 : ○○지방검찰청	
참조 :	검사	차장검사
제목 : 심사신청	아래 사람에 대한 ○○○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 ) ( 당 세 )
첨부 : 1. 치료감호소장,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1통 2. 치료감호사안조사기록 3. 치료감호판결등본 4. 형 및 치료감호집행기록 5. 서약서 6.		

(심사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을)]

이 유
-----

(심사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치 료 감 호 소 ○ ○ 보호관찰소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치료 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본 적	( ) ( ) 세)
의 건		
첨부 : 참고자료		

(심사신청에대한의견서)

[별지 제25호서식]

치 료 감 호 소 ○ ○ 보호관찰소				년 월 일
20 제 호				발신 :
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제목 심사신청요청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료 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본 적	( ) ( ) 세)		
치료감 호처분	판 결 선 고 법 원	법원 지원	보호관찰 개시일자	년 월 일
	판 결 내 용		보호관찰 개시사유	
	간 여 치료 감 호 기간	년 월 일	보호관찰 종료예정일	년 월 일
의 건				
첨부 : 참고자료				

(심사신청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갑)]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주거	(한자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당 세)	주민등록번호	
피치료감호자	직업	(한자 )		
	주거	(한자 )		
피치료감호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당 세)	주민등록번호	
	직업	치료감호집행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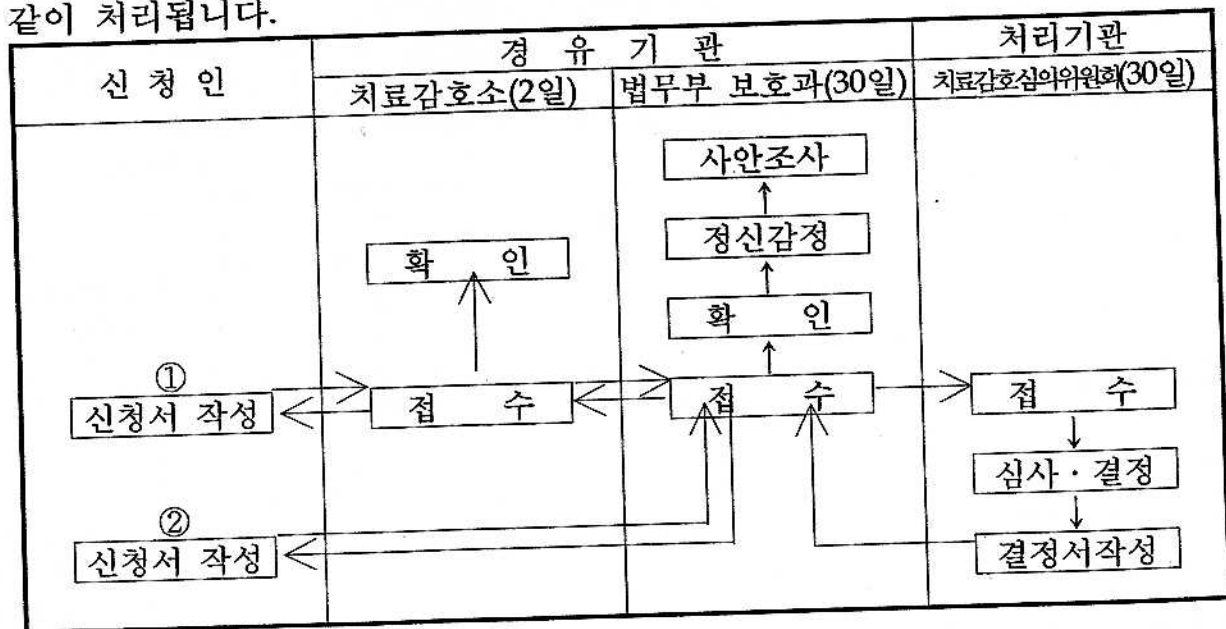
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동인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첨부 : 1. 치료감호판결등본  
2.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등 관계소명자료  
3.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귀중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이 신청서는 치료감호소나 법무부 보호과에 제출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의서식(을)]

이 유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치 료 감 호 소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년 월 일		
참조				
제목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발신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 치료감호 종료심사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주거	(한자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당 세)	주민등록번호	
	직업	치료감호집행개시일		
의견				
첨부 : 진단서 또는 결정서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20 보(신)제 호

결 정

신 청 인	적거업호명일	(당 세)
피치료 감호자	본주직주성생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주 이 적	문 유 조	
적 용 법 조		

년 월 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결정서)

[별지 제29호서식]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번 호	제 호	제 호
수 리		
심 사 신 청 요 청 판 서		
신 청 구 분		
주 임 검 사		
인 적 사 항	주 거	
	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 ) ( )
	생 년 월 일	(남·여) (남·여)
치 료 감 호 집 행 상 황		
검 사 처 분	심 사 신 청	
	심 사 불 신 청	
결 정	결 정 일	
	요 지	
비 고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서)



## 전체 목차

### 제1권 - 공대위 내부자료

- 간담회 참석 요청,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 2003.2.19.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의 폐지(개선)를 위한 인권시민단체간담회, 2003.2.26.
- [제안서]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연대기구' (가칭) 참여 요청 건 및 기간 경과 보고, 2003.2.28.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회의 안건, 2003.3.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차 연석회의, 2003.3.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2차 연석회의, 2003.3.11.
- 내부워크샵 참석 요청, 2003.3.17.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사업계획서, 2003.3.19.
- 사회보호법의 내용 및 그 문제에 대하여, 이상희, 2003.3.20.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내부워크샵 정리메모, 2003.3.20.
- 사회보호법 소책자 회의 보고, 2003.4.3.
- 서신, 이상희, 2003.4.6.
- 사회보호법 공대위 향후 일정과 4월 7일 회의에서 논의 할 내용,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의 기본활동방향, 2003.4.7.
- 사회보호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공동사무국,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4차 집행위,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5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4.21.
- 토론회 준비팀, 2003.4.21.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6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5.9.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6차 집행위 회의록, 2003.5.9.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전략, 2003.5.1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8차 집행위원회, 2003.6.2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차 집행위, 2003.7.
- 공대위 전체수입, 2003.7.1.
- 치료감호 연구단위 모임 보고, 2003.7.7.
- 사례를 통해본 치료감호소의 문제, 2003.7.7.
- 치료감호 연구단위 모임 <2차>, 2003.7.14.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0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8.12.

- 치료감호와 인권-네번째 워킹보고합니다, 2003.9.1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2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10.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5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4.1.16.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1년 활동 평가서, 공대위 사무국, 2004.3.10.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7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4.5.27.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쟁점 정리, 2004.6.16.
- 이호중 교수님 의견, 2004.6.

### 제2권 - 활동자료(1) (2003년 이전)

#### ■ 2002년 이전

- 사회보호법위헌여부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박찬운, 2002.11.16.
-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호소문, 조석영, 2002.12.

#### ■ 2003년

- 청송감호소 피감호인에게 보내는 편지,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2.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3.10.
- '문명국가의 수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전, 2003.3.11.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03.3.11.
- 현황, 치료감호소, 2003.3.13.
- 질의서(헌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 수신), 조석영, 2003.3.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송2보호감호소 방문 보고, 2003.3.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 협조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9.
-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안(초안), 공대위 사무국/열린회의 워크샵팀, 2003.4.10.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에 대한 협조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10.
- 사회보호법TFT 제3차·모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03.4.11.
- 진정에 대한 회신(1035 양대길 수신), 법무부, 2003.4.14.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 미상, 2003.4.14.
- 위임장 등 작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청송제2보호감호소, 2003.4.16.
- [자료집]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첫 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29.

- 헌법소원제기 및 감호소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 이상희, 2003.5.2.
- 진정에 대한 회신(권보상 수신), 법무부, 2003.5.7.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15.
- 청송제2보호감호소 고충처리반, 2003.5.16.
- 현황, 치료감호소, 2003.5.16.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초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1.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호중, 2003.5.22.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5.23.
- 그대는 보이는가, 그대는 들리는가, 반인권의 상징, 청송의 실태 그리고 저 처절한 외침을,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5.24.
- [보도자료] 청송 2감호소 단식농성 4일째-출소자 1인 청와대 앞 시위 돌입-공대위 청송단식농성 유감 성명발표, 2003.5.26.
- 청구이유 보충서(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이상희, 2003.5.27.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및 법무부 항의방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8.
- [공문] 청송 제2 보호감호소 단식농성과 관련 면담 신청(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9.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법무부 "보호감호 혁신 방안" 발표, 법무부, 2003.5.29.
- 법무부 개선안을 비판한다, 피보호감호자 대표단 일동, 2003.5.30.
- 법무부의 '보호감호 혁신 방안'에 대한 반박 성명서:참여정부는 보호감호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의 문을 열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30.
- [보도자료] 성명서-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 2003.5.31.
- 진정서(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귀중), 조석영, 2003.5.
- 보호감호행정 혁신방안 검토(안), 법무부, 2003.5.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에 대한 공대위 기자회견 및 출소자 증언대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
- 소장(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 및 죄명별 분류'에 관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유해정/법무법인 한결, 2003.6.3.
- [소책자]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2003.6.13.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616명 헌법소원 제기 및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7.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18.
- 헌법소원 질의서 분석결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
- [공문] 법무부 보호감호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질의서(법무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협조 요청(민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정보공개청구서(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송제1감호소 및 청송 제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전과비율), 유해정,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은 왜 반인권 악법인가?" -지역단체 활동가 및 시민 간담회 개최 요망,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4.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6.
- 보호감호제도를 위한 변명,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6.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
- [자료집]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7.1.
- [공문]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동대책위원회 수신), 법무부, 2003.7.5.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7.5.
- 제1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7.14.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 2003.7.29.
- 중재신청이유(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준비서면(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헌법재판소의 청송감호소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28개 인권단체 의견서, 2003.8.6.
-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법무부 장관 및 정책위원회 위원, 정책기획단 수신), 26개 민간단체, 2003.8.21.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8.26.
- 편지(강금실 법무부장관 수신),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8.27.
- 사회보호법폐지 법안 발의 환영 논평,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
- [보도자료] 사회보호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운영실태 직접 점검기 위해 청송보호감호소 방문, 법무부, 2003.9.4.
- 치료감호와 인권-그동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정하, 2003.9.15.
- <보호감호제 운영개선이라는 법무부 입장에 부쳐> 보호감호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6.
- 제3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9.17.
- <기자회견문> 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2003.9.17.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동참의 건(대한변호사 협회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2003.9.19.
- 보호감호가출소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계획 보고, 법무부, 2003.9.20.
- 편지(22일 감호소 가출소자 상경 기자회견 경과보고 등), 조석영, 2003.9.24.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법무부 앞 1인시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4.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단식농성 돌입 보도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조사 방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과, 2003.9.29.
- 업무현황, 청송제1보호감호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의 단식 3일째를 맞아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 517인 선언,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들, 2003.10.1.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 10일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국회앞 시위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8.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13.
- 심신장애자 등에 관한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
- [보도자료] 치료감호제도 관련 의크샷 보도요청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0.
- [자료집]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워크샵,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1.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출소자 사회정착의 건(최용규 의원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24.
- [보도자료]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2.5.
-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봐야할 때, 정범구 의원, 2003.
- 법무부정책위원회 관련, 2003.
- 근로일과표, 2003.

-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2003.
- 자비부담의약품 허가품목 내역서, 2003.
- 피보호 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3.

### 제3권 - 활동자료(2) (2004년 이후)

#### ■ 2004년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1.
-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의 당위성 및 향후 출소자 대책(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신), 26개 민간단체, 2004.1.12.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2004.1.13.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에 대한 환영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3.
- [보도자료]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6.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원로 및 대표자 선언 동참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27.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 존재 계검토키로, 법무부, 2004.1.27.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원로 및 인사 선언 동참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30.
- [보도자료]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 단식농성 돌입,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2.2.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대표, 인사 312인 선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2.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원로 및 대표 선언, 2004.2.4.
- [공문] 청송 제2감호소장님 면담 및 피감호자 대표 면담의 건(청송 제2보호감호소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8.
- [공문] 청송 제1감호소장님 면담 및 피감호자 대표 면담의 건(청송 제1보호감호소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10.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청송감호소 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10.
- 주요업무계획, 법무부, 2004.3.31.

- [보도자료] 피보호감호자 사망사고, 청송제1보호감호소, 2004.5.13.
- [보도자료] 법무부 정책위원회,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권고, 법무부, 2004.5.18.
- [논평]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7.6.
- [공문] 사법연수원 연수생 및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방문의 건, 천주교인권위원회, 2004.8.10.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들어가며, 노회찬, 2004.8.26.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004.9.7.
-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9.9.
- 청송감호시설 통합운영 방안, 교정국, 2004.9.
- 법무부 보고서(2004. 9.)에 대한 반박의견, 2004.9.
-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4.10.21.
- 소위원회 구성현황, 법제사법위원회, 2004.12.2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2004.7.22. 요구자료), 2004.
- 가출소후 단기 재범자 현황, 2004.
- 2005년
-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질의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2.14.
- 치료감호소 수용현황 등 참고자료, 법무부 보호국, 2005.6.15.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1.
- 6월 임시국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1.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의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 2005.6.21.
-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엄형국, 2005.6.21.
-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독일의 사례, 이진호, 2005.6.21.
- 기존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점, 조성남,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5.6.21.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와 보호치료에 관한 법무부 법률안에 대한 의료인 의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5.6.21.
- 치료 명분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기 없는 인신구속 정당화하는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반대한다, 2005.6.21.
-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5.6.21.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에 즈음한 공대위 성명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9.
- [보도자료] 보호조치결정에 있어 의견진술기회 미부여는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적법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2005.8.25.
- 2006년 이후
- 조사결과보고서-치료감호소 시설 및 처우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2팀, 2006.8.
- 연도미상
-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회람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 (피감호자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I (교정공무원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II (법학교수, 변호사)
- 박영두 사건 자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제4권 - 법령 및 법안 자료

-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법령
- 사회보호법
- 사회보호법 시행령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 2001.7.30.)
- 치료감호소당직근무지침
- 감호근무준칙(1987.10.26. 내규 제6호)
-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1998.12.30. 내규 제130호)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1987.10.20. 법무부훈령 제200호)
- 의료직공무원의보직관리기준(1986.9.1. 법무부훈령 제171호)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987.10.20. 법무부훈령 196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1982.4.10. 법무부령제241호)
-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 규정(1988.2.10. 내규 제24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보호감호소 업무처리지침(예규고 제250호 81.11.25.)
- 피보호감호 병과수행자 처리지침(예규보 제277호 83.6.21. 예규보 제284호 84.3.27.)
- 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칙(예규 제251호 81.12.5. 개정. 83.2.14. 예규 제272호)
- 감호자 근로성적등급사정규칙(예규작업 제248호 81.11.25.)
- 감호자 근로보상금 계산규칙(예규작업 제249호 81.11.25.)

■ 사회보호법 폐지 관련 법안과 검토의견

- 1) 16대국회
-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3.7.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훈, 2004.2.
  - 심신장애자들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심신장애자들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훈, 2004.2.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훈, 2004.2.
  - 치료보호법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훈, 2004.2.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 청원소개의견서, 정범구, 2004.2.3.
- 2) 17대국회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2004.9.1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2004.9.15.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노희찬의원 대표발의), 2004.9.18.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법무부, 2004.10.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제안설명서, 노희찬, 2004.12.24.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2004.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법령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법무부, 2005.9.

제5권 - 참고문헌과 언론보도

■ 참고문헌

- 심재우, 형벌과 보안처분-보안처분법의 개선을 위하여, 고시연구 169호(1988. 4), 고시연구사
- 박정수, [르뽀] 청송 감호소를 가다, 사법행정 제30권 제7호(1989.7), 한국사법행정학회, pp. 54~62
- 박진홍, 피보호감호자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무연구 17('90.12), 법무연수원, pp.301-359
- 고득영, 정신장애자의 범죄와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행정전공, 1992.8.
- 송문호 등,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정규원,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검토
- 허영, 사회보호법의 위헌성
- 박지현,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2조 등에 관한 합헌결정(92헌바28 1997.12.05)에 즈음하여
- 판례
  -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의 허용범위, 대법원 2003.7.25. 2001다60392판결
  - 보안관찰법 제2조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11.27. 92헌바28
  -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0.4. 95헌마24
  -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1.28. 95헌바20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8.29. 94헌마1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25. 91헌마178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2.12.8. 92헌마276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4.1. 89헌마17-85-100-10 9-129-167(병합)
  -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10.27. 89헌마105,125,126(병합)
  -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9.29. 89헌가86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7.14. 88헌가5,8,89헌가44(병합)

#### ■ 언론보도

- 상습범 보호감호 재범억제 효과 없다, 법률신문 조용철 기자, 2001.2.9.
- “삼청교육 6만명 자의적 검거 인권유린”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권고, 서울신문 이창구 기자, 2002.10.2.
- 의문사조사 활동결산 보고회- ‘사회보호 감호제 폐지를’,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02.10.16.
-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2002.10.17.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지정벌,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1.
- <논평>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인권하루소식, 2002.11.2.
- 청송감호소 ‘단식농성’ 파문, 한겨레 박주희 기자, 2002.11.4.
- 청송감호소 농성 500명으로,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5.
- 보호감호제 폐지요구 논란, 경향신문 정성엽 기자, 2002.11.5.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김보영·이주영, 2002.11.7.
- [사설]이런 보호감호제는 폐지해야 한다, 한겨레, 2002.11.8.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9.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13.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1)재범우려 출소자 교화한다며 재수용 “장기 격리로 사회적응 막아”,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14.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2)형 다 살고도 보호감호 또 보호관찰,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2.11.15.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3-끝) ‘사회적응’ 위한 제도 개선 절실,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15.
-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2.14.
-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2.26.
- 국가인권위 시민사회단체·학계 연대 ‘인권TF’ 본격 가동,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3.2.26.
-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3.12.
- [인권 프리즘]반항심 가르치는 보호감호소,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3.3.13.
- 문명국가 수처, 사회보호법 폐지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2003.3.13.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①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3.28.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②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4.4.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③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4.11.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④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3.4.18.

- 쥐꼬리 일당에 시대뒤진 직업훈련 “취업 도움안돼”, 한국일보 고성호 기자, 2003.4.22.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3.4.25.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⑥<끝>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2003.5.2.
- 강 범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5.14.
- 康범무 “보호감호소 이전 검토”, 경향신문 김형기 기자, 2003.5.14.
- ‘사회보호법’ 은 삼청교육대의 사생아?!, 브레이크뉴스, 2003.5.22.
- 피감619명 “보호감호제 현소”, 김남석 기자, 2003.5.23.
- 왜냐면 토론/사회보호법은 소리 없는 사형선고, 한겨레 장유식, 2003.5.24.
- 현장/ “밥 굶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 한겨레 박주희 기자, 2003.5.26.
-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5.27.
- [사설] ‘사회보호법’ 폐지 국회가 나서라, 한겨레, 2003.5.27.
-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5.28.
-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브레이크뉴스, 2003.5.28.
- 청송감호소 르포-600여명 단식 ‘장벽속의 외침’,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3.5.29.
- <2003 핫이슈> 보호감호 제도, 경향신문 조장래 기자, 2003.5.29.
- 인권침해 ‘덜’ 하겠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5.30.
- <사설> 보호감호 개선아닌 폐지 검토해야, 문화일보, 2003.5.30.
- 법무부, 보호감호제 대폭개선,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 2003.5.30.
- <논평>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인권하루소식, 2003.5.31.
- 기고/문제많은 보호감호제 폐지 마땅, 경향신문 박찬운, 2003.5.31.
- [사설] ‘보호감호’ 국가인권위는 뭐하나, 한겨레, 2003.5.31.
- [사설] 보호감호제 폐지할 때다, 서울신문, 2003.5.31.
- [사설] 보호감호제 없애야 한다, 한국일보, 2003.6.3.
-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6.4.
- 현장클리/ “근로보상금 3천원 말 되나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절규,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03.6.4.
- 청송감호소 기출소한 40대의 절규/ “20만원 훔쳐 20년 간혀 이젠 세상이 두려워요”,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03.6.4.
-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임재은, 2003.6.4.
- [사설]청송감호소 실태조사부터 하자, 한겨레, 2003.6.5.

- 왜냐면 토론/장발장의 편지, 한겨레 김홍철(가명), 2003.6.17.
- "보호감호제 재범방지 도움 안된다", 문화일보 우승현 기자, 2003.6.17.
-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6.18.
- "재범방지인가" "이중처벌인가" 보호감호제 존폐 논란 또 수면위로, 동아일보 길진균 기자, 2003.7.31.
-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해소 승소, 법률신문 정성운 기자, 2003.8.5.
- [보호감호 이젠 풀자(1) 청송감호소 르포, 한겨레 김태규 기자, 2003.8.12.
- [보호감호 이젠 풀자(2) '곱창역' 논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3.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상) 시설 둘러보니,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4.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중) 대상 누군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6.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하) 운용 어떻게,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8.
- [보호감호 이젠 풀자(4) 좌담, 한겨레, 2003.8.19.
- [사설]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좋다, 한겨레, 2003.8.20.
- 독자편지/보호감호제 이중 옥살이 가혹해, 동아일보 이영철, 2003.8.23.
- 보호감호소 가출소 대폭 확대,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2003.8.26.
- 보호감호제 폐지안 국회제출, 한겨레 김소희 기자, 2003.9.2.
- [사설] '보호감호제' 16대 국회서 없애자, 한겨레, 2003.9.3.
- [사설]사회보호법 꼭 유지할 이유 있다, 한겨레, 2003.9.15.
- 보호감호자 수 줄인다-법무부, 연내 절반수준, 문화일보 권은중 기자, 2003.9.15.
-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9.18.
- 야, 사회보호법 올안 폐지, 한겨레 김영배·안창현·서정민 기자, 2003.9.18.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선 한나라당, 한겨레, 2003.9.19.
- 피보호감호자 역대 최대 143명 가출소,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2003.9.19.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9.20.
- 보호감호 시작전 심사제 도입,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03.9.20.
-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인권하루소식 강성준, 2003.9.23.
- 청송 감호소 또 단식농성,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3.10.1.
- 왜냐면 토론/나는 절망의 땅으로 내쫓겼다, 한겨레 조석영, 2003.10.2.
- 청송보호 감호소 단식농성 수용자 숨져, SBS 신승이 기자, 2003.10.4.
- '사회보호법 폐지' 또 논란, 머니투데이, 2003.10.6.
- 독자기자석/보호감호자 가출소 확대 취업알선 등 대책도 함께 외, 한겨레 천원기,

2003.10.6.

-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단식농성 직후에 사망, 한국일보 박진석 기자, 2003.10.6.
-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인권하루소식 김정아, 2003.10.7.
-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망원인은 복막염, 서울신문 김상화 기자, 2003.10.7.
-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좋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문만식, 2003.10.7.
- 여론마당/사회보호법 인권유린 우려, 문화일보 이정하, 2003.10.11.
- [금요칼럼] '보호감호제' 존폐 딜레마, 동아일보 정성진, 2003.10.17.
- 편집자에게/보호감호 연재기사 소중해 사회보호법 폐지 힘써주길, 한겨레 정기영(가명), 2003.10.20.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세계일보 2003.12.1.
- 청송감호소 20년만에 문닫나?...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1일 국회 제출,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 2003.12.1.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12.6.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①거리 떠도는 수백명의 가출소자..절반이 再犯,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9.
- 보호-치료감호제 폐지-개선 가닥,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0.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②7~11월 가출소자 추적,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0.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③부실한 사회재정착 시스템,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1.
- <특집> '2003 겨울터널' 을 지나는 사람들①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12.18.
-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될듯, 서울신문 박정경 기자, 2003.12.22.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쫓아가나,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3.12.23.
-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4.1.13.
- 사회보호법 폐지 건의..인권위 전원위원회 "이중처벌로 인권침해", 세계일보 김창덕 기자, 2004.1.13.
- 정부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매일경제 이창훈 기자, 2004.1.13.
- [사설] '이중처벌' 사회보호법 폐지 마땅하다, 한겨레, 2004.1.14.
-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청와대 "이르면 16대 국회서 처리", 한겨레 백기철·하석·황준범 기자, 2004.1.14.
- 보호감호제 폐지될듯..법무부 "언제든 검토 가능", 세계일보 김창덕 기자, 2004.1.14.
- '치료' 빠진 치료감호 '인권' 만 휘둘린다,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 2004.1.14.
- [사설]사회보호법 더 끌고 갈 명분 없다, 세계일보, 2004.1.15.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 방향 옳다, 동아일보, 2004.1.15.
-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②사회보호법 폐지법,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4.1.16.
-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4.1.17.
- 왜냐면 토론/가출소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가, 한겨레 청송 제1감호소 154번 수용자, 2004.1.19.
- [토론평장]사회보호법 폐지외에 대안 없다, 법률신문 장유식, 2004.1.26.
- 보호감호제 존폐 전면 재검토, 내일신문 엄경용 기자, 2004.1.28.
-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인권하루소식 최은아, 2004.2.3.
-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2.5.
-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인권하루소식, 2004.2.7.
-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4.2.27.
- <기고>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인권하루소식 조석영, 2004.3.17.
- 피보호감호자 재범률 21%로 급증,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2004.3.24.
- ①유해정의 인권이야기①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4.
- 조폭두목 김태춘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서울경제, 2004.5.9.
-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14.
-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안팎-수형자 인권 대폭 개선, 경향신문 손제민 기자,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권고, 법무부 정책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경향신문 최희진 기자,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04.5.19.
- 보호감호대상 대폭 축소키로, 동아일보 이상록 기자, 2004.5.19.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 서둘러야, 한겨레, 2004.5.20.
- [사설]보호감호, 실제 내용이 문제다, 한국일보, 2004.5.20.
- [정치]당정,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KBS 박전식 기자, 2004.5.21.
- "사회보호법 폐지", MBN뉴스 함영구 기자, 2004.5.21.
- <시론> 사회보호법 폐지후가 중요, 경향신문 유시춘, 2004.5.22.
-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키로,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4.5.22.
- 기고/보호감호, 이중처벌 아니다, 한국일보 정동기, 2004.5.24.
- "보안법 등 반인권법안 조속 개폐해야" /인권단체, 강금실법무 면담,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4.7.14.
- 김승규 법무, "중수부 폐지 반대",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4.8.10.

- [사설] 금 법무장관 발언 경청을, 국민일보, 2004.8.11.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률 급증,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4.8.12.
- 청송감호소 '퇴출' 될듯...여당, 사회보호법 폐지→치료보호법 대체 추진, 2004.8.17.
- 노회찬,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레이더투데이, 2004.8.27.
- 당정, 사회보호법 폐지 원칙 합의, 매일경제 박정철 기자, 2004.9.6.
-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인권하루소식 박석진, 2004.9.10.
- 與 사회보호법 폐지 수혜자는 조폭두목?, 세계일보 김귀수 기자, 2004.9.11.
- 여당이 '주먹代父' 풀어준다?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김태춘씨 출소 가능성, 경향신문 김준기 기자, 2004.9.11.
- 법무부 "보호감호 완전폐지 반대" /강력사범은 존치 필요,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2004.9.20.
- 보호감호제 폐지 당-정 마찰...우리당 폐지추진에 법무부 축소 주장,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2004.9.20.
- 강력범죄 '삼진아웃' 추진-성폭행.강도등 3회이상 범행땐 가중처벌,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2004.10.2.
- 보호감호제 없앤다... "약물중독자등 격리 치료보호법 제정", 한겨레 김의겸 기자, 2004.11.1.
-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11.2.
- [세상읽기] 사회보호법, '무능력자'를 향한 제도적 폭력, 월간노동사회 2004년 12월호(통권제94호), 2004.12.
-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200여명 무기 단식농성, 오마이뉴스 김덕진, 2005.1.11.
-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2005.1.12.
- 청송감호소 재소자 5일째 단식...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 30여명 탈진, 국민일보 김재산 기자, 2005.1.15.
- 청송 재소자들 5일째 단식 가출소 기준 형평성 요구,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5.1.15.
- 사회보호법 폐지해도 상습-강력범은 계속 보호관찰, 세계일보 2005.1.25.
- '청송감호소 단식' 한겨레 기사/마산교도소 삭제 인권위 조사, 한겨레 황상철 기자, 2005.1.31.
- 당정, 보호감호제 폐지 추진, 부산일보 박소운 기자, 2005.2.16.
- 보호감호제 폐지 의미.전망-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 종지부,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2005.2.17.
- [사설] 보호감호 폐지는 마땅하다, 한겨레, 2005.2.17.
- "보호감호 없애주세요" 청송서 본사에 무더기 편지,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5.2.17.
- [설왕설래]청송감호소, 세계일보 정동길 논설위원, 2005.2.18.



-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당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유혜정, 2005.2.19.
- 김태춘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05.3.26.
- [논평]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2005.6.18.
- [해설]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인권하루소식 강성준, 2005.6.22.
- '사회보호법' 폐지안 처리, 국회 법사위소위 통과 청송감호소 폐쇄키로, 경향신문 최재영 기자, 2005.6.29.
- 청송감호소 사라진다, MBC 최장원, 2005.6.29.
-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5.6.30.
- 뉴스브리핑/사회보호법 폐지 앞두고 김태춘씨 어제 석방, 문화일보 노윤정 기자, 2005.7.1.
- 김태춘 풀려났다, 세계일보 김태훈강구열 기자, 2005.7.1.
- "출소자들 바른 삶 살게 돕겠습니다",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 2005.7.4.
- 서울중앙지검 '사보법폐지 강력범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5.7.17.
- "사회보호법 말뿐인 폐지" 경과규정에 반발,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5.7.18.
- '보호감호 2년이상' 전원 가출소 혜택,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5.7.20.
- 사회보호법 폐지로 현판내리는 '인권침해' -청송감호소 역사속으로, 경향신문 백승목.선근형 기자, 2005.8.3.
- 청송감호소, 22년만에 '옛이야기' 로,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5.8.3.
- [시론] 인권, 청송감호소를 나오다, 동아일보 이호중, 2005.8.4.
- [한국시론] 사회보호법은 없어졌지만..., 한국일보 장유식, 2005.8.8.
- 17년만에 자유인된 김태춘씨...고법, 보호감호 청구 기각, 경향신문 이인숙 기자, 2005.8.11.
- 보호관찰대상 1200명 '잠적', 서울신문 박경호 기자, 2006.5.23.
- 탈주범 이낙성 1년7개월만에 검거, 한겨레 전진식 김기태 기자, 2006.11.1.
- 딱한 이낙성? "초라한 외모...사회보호법의 희생양" 동정, 한국일보 고찬유강철원 기자, 2006.11.2.
- "교도소 배포 매체 일부 삭제, 위법 아니다", 매일신문 최창희 기자, 2006.12.23.

####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4권 - 법령 및 법안

■발행일 : 2008년 10월 6일

■펴낸곳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